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12. 13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11월 13일

나. 발 의 자 : 유승용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
제5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12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도로변,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2조)
-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및 운영·관리자 업무에 관한 규정(안 제6조~제8조)
-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관리방안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변 및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 수거함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,
 -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, 사업자,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서는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·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6조에서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·관리자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헌옷 재활용에 대한 수집·운반·처리 등과 의류수거함 설치로 인한 차량의 통행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 - 안 제9조에서는 불법 의류수거함 등에 대한 강제철거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관리 등이 소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,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¹⁾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1)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권고 (국민권익위원회, 2016.7.25.)

-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설치·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권고

※ 최근 3년간(2013.1~2015.12) 국민신문고에 총 1,552건의 고충민원이 제기됨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1월 일

발의자 : 유승용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도로변,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2조)

나.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3조~제4조)

다.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
라.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및 운영·관리자 업무에 관한 규정(안 제6조~제8조)

마.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관리방안(안 제9조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7. 11. 8. ~ 11. 13.) : 의견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영등포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
2.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·시행
3.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4.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

제3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제4조(구민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제5조(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) 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·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 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6조(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등)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·관

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·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·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운영·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운영·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·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·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.

제7조(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 업무 등) ① 제6조에 따라 운영·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
2.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·운반·처리
3.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
4.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
5.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·감독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 준수사항) ① 운영·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·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② 운영·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운영·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.

④ 운영·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기타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.

⑤ 운영·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⑥ 운영·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.

⑦ 운영·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,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.

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·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) 구청장은 운영·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발견 시 강제철거하고,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